

#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70,993,677	77,129,810
일반회계	2,344,556,948	70,336,708
특별회계	226,436,729	6,793,102
공기업특별회계	180,663,169	5,419,8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790,209	2,633,7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872,960	2,786,189
기타특별회계	45,773,560	1,373,207
주택사업특별회계	97,244	2,9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206,243	396,187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1,880,155	56,405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151,873	244,556
교통사업특별회계	20,600,085	618,003
대지보상특별회계	431,801	12,954
수질개선특별회계	1,330,559	39,9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600	2,268

제 2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00,66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